

부모부양과 고부갈등 '유감'

94.2.4

지난 14일 '별거노모에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두고 세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외아들부부와 불화로 집을 나와 부양료 청구소송을 냈던 김모씨(67)의 소송은 노모의 승소로 일단락됐지만 판결이 난 뒤에도 여전히 팽팽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의견대립을 초점 보도한 일부 언론의 태도에는 시어머니입장이나 며느리입장에 서있는 양측 여성들의 '불만어린' 반론도 없지않았던 것.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노모의 부양비 청구소송도 이야기거리였지만 이를 '고부갈등'에 대한 판결로 해석하는 언론의 편협한 시각은 씁쓸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우선은 부모부양과 관련한 노인문제를 며느리-시어머니간의 고부갈등의 눈으로만 보는 것 자체가 부모를 점점 모시기 어려워지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간과되고 이에 따른 국가나 사회의 '복지책임'은 언급되지 않은 채 가정내 문제만으로 전가할 위험이 크다는 반응들이다.

이 사례에서 노모는 "며느리의 박대로 별거"하게 됐음을 얘기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어려운 살림은 몰라준 채 넉넉히 먹고 쓰기 바라는 시어머니가 서운하다"

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한쪽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양쪽의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법한 우리 주변의 얘기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입장에 서게 되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르고 불만이 쌓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상사다.

그러나 고부갈등만은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똑같이 '속 좁은 아녀자'로 한뭇몸해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만연된 시각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독 고부갈등에는 아들이자 남편인 '남자의 처신'은 논외로 된채 여성끼리의 대결로 몰고가는 태도를 이제는 여성들이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만도 유사한 사건이 5~6건이나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고부간 갈등도 개재되지 않았다고 할 수야 없겠지만 고부갈등보다는 서로의 양보와 이해, 상호 고통분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른 경우라면 법정시비로 비화되는 것은 참으로 씁쓸하지만 별도리가 없는 일면이기도 하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른 시점에서 부모부양을 며느리의 책임만으로 단순한 고부갈등으로 치부해온 사회나 남성들의 반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